

보도시점 2025. 2. 25.(수) 석간      배포 2025. 2. 24.(화)  
2025. 2. 25.(수) 06:00

##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2월 25일(수)부터 4월 6일(월)까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은 상이 1~2급인 국가보훈대상자\*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,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이다.

\* ▲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▲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

현재 상이 3~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('24.9월~), 1~2급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 신청자격이 없었다. 개정안에 따르면, 간호수당\*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
\*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~2급 상이자에게 지급(보훈부)

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, 관련 의견은 4월 6일(월)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.

< 의견 제출방법 (우편) >

○ 제출처(문의)

- 주소 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&G 세종타워 13층,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- \* 전자우편 : leemy64@korea.kr, fitryh96@korea.kr
- 전화 : (044) 202-3344, 3345, 팩스 : (044) 202-3963

○ 기재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시 이유 명시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

<붙임>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요

<별첨>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장애인정책국<br>장애인서비스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고운 (044-202-334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주무관 | 이민영 (044-202-3345) |



**붙임****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요**

- (근거)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의거, 2011년부터 시행
- (목적)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
- (지원대상) 6~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
- (지원규모) 활동지원급여(활동지원등급별 산정) + 특별지원급여(생활환경 고려)
  - \* 최소 약 60시간(1,040천원) ~ 최대 약 480시간(8,293천원)
  - \* 활동지원등급 : 기능상태, 사회활동, 가구환경 등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~15구간으로 구분

**<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>**

| 구분             |   | 급여량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활동<br>지원<br>급여 | 급여  | 1구간                  | 2구간                  | 3구간                  | 4구간                  | 5구간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| 8,293천원<br>(약 480시간) | 7,774천원<br>(약 450시간) | 7,257천원<br>(약 420시간) | 6,739천원<br>(약 390시간) | 6,221천원<br>(약 360시간) |
|                |   | 6구간                  | 7구간                  | 8구간                  | 9구간                  | 10구간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| 5,703천원<br>(약 330시간) | 5,181천원<br>(약 300시간) | 4,665천원<br>(약 270시간) | 4,148천원<br>(약 240시간) | 3,629천원<br>(약 210시간) |
|                |   | 11구간                 | 12구간                 | 13구간                 | 14구간                 | 15구간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3,112천원<br>(약 180시간)  | 2,593천원<br>(약 150시간) | 2,076천원<br>(약 120시간) | 1,558천원<br>(약 90시간)  | 1,040천원<br>(약 60시간)  |                      |
| 본인<br>부담       | -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) : 면제<br>- 차상위계층(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 : 2만원(정액)<br>- 차상위 초과 :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(41,600원 ~ 216,200원)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- (급여종류) 활동보조(신체·가사활동·이동지원 등), 방문간호, 방문목욕
  - (활동지원기관)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, 수급자수,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
  - (활동지원인력) 활동보조는 교육(50시간)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,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,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
- (시간당 단가) 활동보조 17,270원/시간('26년 기준)